

베트남 외국투자법*

배 양 수**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투자형식
- 제3장 투자보장방법
- 제4장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본 기업의 권리와 의무
- 제5장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 제6장 부칙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공업화,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고, 국가의 각 원천을 효과적으로 개발, 사용하는데 기초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본 법은 1996년 11월 12일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외국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다.

* 본 투자법은 1996년 11월 16일 개정된 것을 2000년 6월 베트남 국회에서 일부 수정된 것을 번역한 것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부교수.

제1장 총칙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평등 및 상호이익,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는데 기초하여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자본 및 기타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해서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외국 직접투자”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자가 현금자본 혹은 어떠한 형태의 재산을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2. “외국 투자자”란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의 경제조직, 개인이다.
3. “외국측”이란 단수 혹은 복수의 외국 투자자로 이루어진 한 측을 말한다.
4. “베트남측”이란 모든 경제 구성원에 속한 단수 혹은 복수의 베트남 기업으로 이루어진 한 측을 말한다.
5. “양측”이란 베트남측과 외국측이다. “복수측”이란 베트남측과 다수의 외국측 혹은 외국측과 다수의 베트남측 혹은 다수의 베트남측과 다수의 외국측이다.
6. “외국 투자자본 기업”이란 합자기업 및 100% 외자기업을 포함한다.
7. “합자기업”이란 양측 혹은 복수측이 합자계약서 혹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기초하여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이며, 합자계약서에 기초하여 외국 투자자본 기업과 베트남 기업이 협력하여 혹은 합자기업이 외국 투자자와 협력하여 만든 기업이다.

8. “100% 외국 투자자본 기업”이란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100% 자본을 투자한 기업이다.
9. “경영협력계약서”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양측 혹은 복수측이 체결한 문서이다.
10. “합자계약서”란 베트남에서 합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본 조 7 항에 언급한 각 측 사이에 체결된 문서이다.
11. “건설-경영-양도 계약서”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특정한 기간에 경영을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외국 투자자는 그 시설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관계기관과 외국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문서이다.(이하 BOT 계약이라 부름. BOT는 Build - Operation - Transfer의 약자임, 역자주)
12. “건설-양도-경영 계약서”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외국 투자자는 그 시설을 베트남에 양도하며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에게 투자자본 및 합리적인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그 시설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베트남의 관계기관과 외국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문서이다.(이하 BTO 계약이라 부름. BTO는 Build - Transfer - Operation의 약자임, 역자주)
13. “건설-양도 계약서”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외국 투자자는 그 시설을 베트남에 양도하고 베트남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본과 합리적인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이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베트남의 관계기관과 외국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문서이다.(이하 BT계약이라 부름. BT는 Build - Transfer의 약자임, 역자주)

14.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란 경계가 확정된 지역 내에서 수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활동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이행하는,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공업지역이다.
15. “수출품제조기업”이란 수출품제조기업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며 수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품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행하는 기업이다.
16. “공업단지”란 정부에 의해서 혹은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공업생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행하는 지역이다.
17. “공업단지 기업”이란 공업단지 내에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이다.
18. “투자자본”이란 법정자본과 차입자본을 포함한 투자안을 이행하기 위한 자본이다.
19. 외국 투자자본 기업의 “법정자본”이란 기업정관에 기록된 기업설립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본의 정도이다.
20. “납입자본”이란 기업의 법정자본에 납입하는 각 측의 자본이다.
21. “재투자”란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에서 득한 이윤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은 본 법에 규정된 투자 형식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새로운 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제3조

각 외국 투자자는 국민경제 분야의 각 영역에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은 아래와 같은 분야와 지역에 외국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1. 분야
 - 1) 수출상품의 제조
 - 2) 농림수산물의 양식, 조립, 가공

- 3) 고기술, 현재적 기술의 사용, 생태환경의 보호, 연구 및 개발투자
- 4) 다수의 노동력 사용, 베트남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원료를 가공
- 5) 사회간접자본 및 중요한 공업생산공장의 건설

2. 지역

- 1)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 2)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베트남은 국방, 안보, 문화, 역사유적, 미풍양속 및 생태환경에 위해를 주는 분야 및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투자허가서를 발급치 않는다.

시기별로 개발방향과 계획에 근거하여 정부는 투자 장려지역을 규정하고 장려프로젝트 목록을 공포하며, 특히 투자장려 분야, 여건을 갖춘 분야의 목록, 투자허가서를 발급치 않는 분야의 목록을 공포한다.

베트남의 개인 경제조직은 정부가 규정한 분야와 조건 내에서 외국 투자자와 투자협력을 한다.

제2장 투자형식

제4조

외국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다.

1. 경영협력계약서에 기초한 경영협력(Business Cooperation on Contract, BCC라 부름)
2. 합자회사(Joint - Venture Company, JVC라 부름)
3. 100% 외자기업

제5조

양측 혹은 복수측은 생산품의 이익 분배, 상품의 분배 및 기타의 경영협력 형식으로 경영협력계약서에 기초한 경영협력을 한다.

경영 대상, 내용, 시한과 각 측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각 측의 관계는 각 측이 합의하고 경영협력계약서에 기록한다.

제6조

양측 혹은 복수측은 합자계약서에 기초하여 베트남에 합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서로 합작할 수 있다.

합자기업은 베트남에서 새로운 합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자 혹은 베트남 기업과 합작할 수 있다.

합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자격을 갖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제7조

1. 합자기업에 참여하는 외국측은 다음과 같이 법정자본을 납입한다.

- 1) 외화, 베트남 투자에서 취득한 베트남 화폐
- 2) 설비, 기계, 공장건물, 기타 시설물
- 3) 공업소유권 가치, 노하우, 기술공정, 기술 서비스

2. 합자기업에 참여하는 베트남측은 다음과 같이 법정자본을 납입한다.

- 1) 베트남 화폐, 외화
- 2)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가치
- 3) 각종 자원, 법률에 따른 수면 및 해수면 사용권 가치
- 4) 설비, 기계, 공장건물, 기타 시설물
- 5) 공업 소유권 가치, 기술 노하우, 기술공정, 기술 서비스

3. 본 조 1, 2항에 규정된 이외의 형식으로 자본을 납입하는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합자기업의 법정자본에 납입하는 외국측 혹은 복수 외국측의 납입자본은 각 측의 합의에 따르고, 최고 한도를 제한하지 않으나 정부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자본의 30% 미만은 안된다.

복수가 참여하는 합자기업에 대해서 각 베트남측의 최소 자본납입 비율은 정부가 규정한다.

정부가 규정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측은 합자기업의 법정자본에서 베트남측의 납입자본 비율의 漸增에 관해서 합의한다.

제9조

합자기업 내의 각 측의 납입자본 가치는 자본을 납입하는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확정한다. 자본 납입의 진도는 각 측이 합의하여 합자계약서에 기록하고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본 납입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 기계의 가치는 독립 감정기관이 발급한 감정서가 있어야 한다.

각 측은 자신의 납입자본 가치에 대해서 정확성과 성실성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필요시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각 측의 납입자본 가치를 재 감정하기 위해서 감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합자기업의 이윤 및 손실 분담은 각 측이 합자계약서에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측의 납입자본 비율에 따른다.

제11조

이사회는 합자기업의 지도기관이며 합자기업에 참여한 각 측의 대표를 포함한다.

각 측은 합자기업의 법정자본 납입부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자신의 사람을 지정한다.

양측이 합자하는 경우에는 각 측은 이사회에 적어도 2명의 구성원을 둔다.

복수가 합자하는 경우에는 각 측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구성원을 둔다.

만일 한 측의 베트남측과 다수의 외국측 혹은 한 측의 외국측과 다수의 베트남측이 합자하는 경우에는 그 베트남 측 혹은 외국측은 이사회에 최소한 2명을 추천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합자기업과 외국 투자자 혹은 베트남 기업과의 사이에 설립되는 합자기업의 이사회 내에는, 활동 중인 합자기업은 적어도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그 중에 최소한 1명은 베트남측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12조

합자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합자 각 측이 합의하여 선출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 의결의 이행을 감찰한다.

사장과 각 부사장은 이사회가 임명하고, 기업활동의 운영 및 관에 있어서 베트남 법률과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장 혹은 수석 부사장은 베트남 공민이어야 한다.

이사회 의장, 사장, 수석 부사장의 임무와 권한은 기업정관에 기록한다.

제13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혹은 이사 2/3 이상 혹은 사장 혹은 수석 부사장의 제의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회의는 최소한 합자에 참여한 각 측 대표 이사회 구성원 2/3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1. 합자기업의 조직 및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장, 수석 부사장의 임면, 기업정관의 수정 및 보완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의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합자 각 측은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정관에 합의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표결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15조

외국 투자자는 100% 외자기업을 베트남에 설립할 수 있다.

100% 외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서 법인자격을 갖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정부가 결정한 중요한 경제기업에 대해서, 각 베트남 기업은 기업주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합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업의 일부 자본을 매입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 투자기업의 법정자본은 기업 투자자본의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비율은 30%보다 낮을 수 있으나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활동과정 중에 외국투자기업은 법정자본을 감자 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의 활동 시한 및 경영협력계약의 시한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허가서에 기록되나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상무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보다 장기 의 시한을 규정할 수 있지만 최대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외국 투자자는 본 법 제4조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서 수출가공구 및 공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다.

각 경제 구성원에 속한 베트남 기업은 본 법 제4조 1,2항에 규정된 형식 하에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구에서 외국 투자자와 합작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자본 100%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각 기업과 수출품제조기업과의 사이에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상품 교환 관계는 수출입 관계로 간주되고 수출입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수출품제조기업은 정부가 규정한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원료, 물자,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가공구로 들여갈 수 있다.

정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경영활동과정에서 투자형식의 변경, 기업합병, 흡수, 분리를 허가받을 수 있다.

정부는 투자형식의 변경, 기업합병, 흡수, 분리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관계기관과 건설-경영-양도계약, 건설-양도-경영계약, 건설-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다. 외국 투자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정부는 건설-경영-양도계약, 건설-양도-경영계약, 건설-양도계약에 따른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3장 투자보장방법

제20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에서의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공평하고 타당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21조

베트남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의 자본 및 기타 합법적 재산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징발 혹은 압수하지 않으며, 외자기업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공업 소유권을 보호하고,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하는 활동에서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1. 베트남 법률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기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자 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12 比較法學 (第 13 輯)

경우에, 외자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계속 본 법 혹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우대를 향유하거나 국가로부터 아래의 방법에 따라 타당한 해결을 받는다.

- a) 프로젝트의 활동목표의 변경(업종변경: 역자주)
 - b) 법률 범위 내에서의 감세, 면세
 - c) 외자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의 손해는 손실로 간주하고 차기 연도로 이월한다.
 - d) 필요한 경우에 타당한 배상을 검토한다.
2. 투자허가서를 받은 이후에 공포된 신 규정이 보다 우대된(유리한) 경우에는 외자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에 적용한다.

제22조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는 아래를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1. 경영활동에서 얻은 이윤
2. 기술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급
3. 활동과정 속에서의 외국 채무의 원금 및 이자
4. 투자자본
5. 자신의 합법적 소유권에 속한 돈 및 기타 재산

제23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혹은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을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자신의 합법적 소득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제24조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 사이의 분쟁 혹은 합자 각 측 사이의

분쟁 및 외국 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계약 참가 각 측과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은 우선적으로는 협의와 화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각 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중재조직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한다.

합자기업 혹은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각 측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중재조직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합의할 수 있다.

건설-경영-양도계약, 건설-양도-경영계약 및 건설-양도계약에서 발생한 각 측 사이의 분쟁은 각 측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록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4장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본 기업의 권리와 의무

제25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경영요구에 따라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베트남 국민의 채용을 우선하여야 하며, 관리 및 기술수준을 요구하나 베트남이 부응할 수 없을 때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할 베트남 노동자를 훈련시켜야 한다.

외국 투자자본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는 노동계약, 단체노동협약 및 노동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보장된다.

제26조

사용자, 베트남 노동자 및 외국 노동자는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서로의 명예, 인격 및 풍속을 존중한다.

제27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베트남 노동자의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참가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재산 보험을 부보하고, 베트남 보험회사 혹은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받은 다른 보험회사에 민사책임을 진다.

제29조

외국 투자 프로젝트에서의 외국 기술의 베트남으로의 이전은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계약에 의거한 기술의 매입 혹은 기술가치로 자본을 납입하는 형태로 이행된다.

베트남 정부는 기술의 빠른 이전 특히, 선진기술의 이전을 장려한다.

제30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기업의 기본시설을 완공한 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시설을 결산하며 감정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외국 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제31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에 참가한 각 측은 투자허가서에 기록된 목표에 따라 경영 자주권을 가지며 설비, 기계, 물자, 운송수단을 수

입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상품을 직접 혹은 위탁 수출하며, 판매한다.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기술적, 상업적 조건이 동일하면 베트남의 설비, 기계, 물자, 운송수단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범위와 목표 내에서 경영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 주소지 외의 성 및 중앙직속시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고,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 및 중앙직속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교역을 위해 상업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할 수 있고, 모든 교역은 외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베트남 정부는 시기별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환 밸런스를 보장한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와 기타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환 밸런스 지원을 보장한다.

제34조

합자기업 내의 각 측은 합자기업 내의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양도권이 있으나 합자기업 내의 각 측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합자기업 외의 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조건은 합자기업 내의 각 측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유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의 양도는 합자기업 내의 각

측과 합의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경영협력계약 각 측의 권리와 의무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00% 외자기업의 외국 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이윤으로 얻은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측은 25% 세율의 법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35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은 베트남 은행 혹은 합자은행 혹은 외국은행의 베트남 지점에 베트남 화폐 및 외화 구좌를 개설한다.

특별한 경우에 중앙은행은 외자기업에게 외국에 구좌 개설을 허가한다.

제36조

베트남 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것은 환전시점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포한 환율에 따라 이행된다.

제37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베트남 회계제도를 적용한다. 기타의 통용 회계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 참가 외국측의 감가상각제도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외국 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 참가 외국측의 년 재정보고서는 베트남의 독립된 회계회사 혹은 檢算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받은 독립 회계회사의 검산을 받아야 한다. 년 재정보고서는 재무기관 및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38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취득한 이윤의 25%를 법인소득세로 납부한다. 투자를 장려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이윤의 20%를 법인소득세로 내고, 더욱 투자장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한 이윤의 15%를 법인소득세로 낸다. 특별히 투자장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한 이윤의 10%를 법인소득세로 한다.

석유·가스분야 및 기타 회귀자원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석유·가스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본 법 제3조에 규정된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에 따라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이익이 이행된 후부터 최대 2년까지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어서 최대 2년까지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이 많은 투자장려 기준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실현된 때부터 최대 4년까지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이어서 최대 4년까지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한 투자장려에 대해서는 최대 8년까지 법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0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이 세무서에 세금을 결산하고 난 후 손실이 나면 손실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고, 이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손실의 이월 시한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41조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실현한 후에 예비기금, 복지기금, 생산확대기금 및 기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머지 이익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이 결정한다.

제42조

투자장려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재투자한 이익만큼 기 납부한 법인소득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한다. 정부는 분야, 지역, 형식 및 재투자 시한에 따른 환급세율을 규정한다.

제43조

이윤을 해외로 반출할 때 외국 투자자는 외자기업의 법정자본에 외국 투자자가 납입한 정도에 따라서 혹은 경영협력계약에 실현한 자본에 따라서 3%, 5%, 7%의 이윤 해외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4조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본 법에 따라서 투자하면 법인소득세율이 10%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종의 프로젝트 보다 법인소득세를 20% 감면해 주며, 이익의 외국으로 반출시 반출하는 이윤의 세율을 3%로 한다.

제45조

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본 법 제 38,39,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율,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

및 이윤의 외국 반출세율의 적용을 결정한다.세율 및 감면기간은 투자 허가서에 기록된다.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투자조건이 변경되면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결정한다.

제46조

1. 토지, 수면, 해수면을 사용하는 외국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경영-양도 프로젝트, 건설-양도-경영 프로젝트, 건설-양도 프로젝트 및 산악, 원격지,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수면, 해수면 임대료의 면제 혹은 감면을 규정한다.

2. 베트남측이 토지사용권을 자본으로 납입한 경우, 베트남측은 철거와 보상의 책임이 있고 토지사용권을 얻기 위한 각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의 성 및 중앙직속시가 철거와 보상을 실시하고 토지 임차에 관한 절차를 완수한다.

3. 외국투자자본 기업은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신용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토지사용권 가치와 토지와 관련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투자자본 기업이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47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의 수출입품에 대한 수출입세는 수출입세법에 따라 적용받는다.
2.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은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아래를 포함하여 수입세가 면제된다.
 - a) 기계, 설비
 - b) 일관라인에서 사용되는 전용 운송수단과 노동자 통근용 운송수단
 - c) 설비, 기계, 전용운송수단에 따르는 부분품, 부품, 부속, 금형 등
 - d) 일관라인의 기계, 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와 물자 및 기계, 설비에 따르는 부분품, 부품, 부속, 금형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와 물자
 - e)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자재
본 조항에 규정된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의 면제는 생산규모의 확대, 교체, 기술혁신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3. 투자 특별장려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혹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생산을 위한 원료, 물자, 부분품의 수입은 생산을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 수입세를 면제한다.
4. 정부는 특별히 투자장려가 필요한 상품에 대한 수출입세의 면제, 감면을 규정한다.

제48조

수출품제조기업은 수출가공에서 외국으로의 반출 및 외국으로부터 수출가공구의 반입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 관세가 면제된다.

공업단지 내의 수출품제조기업, 외국 투자자본 기업은 본 법 제 38,39,43조 및 44조의 규정에 따라 장려 및 특별 장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세금에 관한 우대를 받는다. 정부는 공업단지 내의 수출품제조 기업, 외국 투자자본 기업에 대해서 업종별로 세금 우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9조

본 법에 규정된 세금 외에도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혹은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을 위해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베트남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52조

외국 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동이 종료된다.

1. 투자허가서에 기록된 활동기간이 종료되었다.
2. 계약서 혹은 기업 정관에 규정된 활동종료 조건 혹은 각 측의 합의에 따라
3. 투자허가서의 규정 혹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에 따라
4. 파산이 선고되었다.

제53조

1. 본 법 제52조 1, 2항에 규정된 경우로 활동이 종료될 때,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 참가 각 측은 기업의 재산 청산, 계약 청산을 진행한다.
2. 기업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파산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기업의 재산 청산은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파산 해결은 기업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현된다.
4. 베트남측이 토지사용권으로 자본을 납입한 경우, 기업이 해체 혹은 파산되면 자본으로 납입한 잔존 토지사용권 가치는 기업의 정리 재산에 속한다.

제5장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제54조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투자 전략,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외국투자 활동에 관한 법률의 공포
3. 외국투자 협력과 관련된 각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지방을 지도한다.
4. 투자허가서의 발급 및 회수
5. 외국 투자활동 관리에서 각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 협력을 규정한다.
6. 외국투자 활동을 검사, 감사 및 감찰한다.

제55조

정부는 베트남에서의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한다.

정부는 투자허가서 발급 심사,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 업무를 규정하고, 경제-사회개발계획, 투자안의 영역, 성격, 규모에 근거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춘 성 및 중앙직속시에 투자허가서 발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내의 투자안에 대한 투자허가서 발급 업무를 규정한다.

제56조

계획·투자부는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이며, 정부가 베트남에서의 외국투자 활동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계획·투자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이 있다.

1.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전략 및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 및 정책 안을 기안하며,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에서 각부, 부급기관, 정부산하기관과 협의하며, 외국투자에 관한 정책 및 법률 이행에 관해서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를 지도한다.
2.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하고 종합하며, 투자 절차를 안내하고, 투자촉진 및 자문활동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한다.
3. 투자안을 접수하고 심사를 주도하며 해당 권한에 속한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4.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형성, 전개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재 역할을 한다.
5. 외국투자 활동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평가한다.
6.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외국 투자활동 이행 업무를 검사, 감사한다.

제57조

각부, 부급기관, 정부산하기관은 직능 및 권한에 따라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를 이행한다.

1. 외국투자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계획 수립시 계획·투자부와 협의한다.
2. 해당 분야의 외국투자 자본 유치 프로젝트 목록, 계획을 작성하고, 투자촉진 운동을 실시한다.
3. 투자안 심사에 참여한다.
4. 투자안의 전개 및 이행과 관련된 각 절차를 안내하고 해결한다.
5. 해당 관할에 속한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의 활동을 검사, 감사한다.
6. 법률 규정에 따른 권한에 속한 기타 임무를 이행한다.

제58조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직능 및 권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1. 승인된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외국투자 자본 유치목록을 작성하고 공포하며, 투자촉진 운동을 실시한다.
2. 해당지역의 외국 투자안 심사에 참여한다.
3. 투자안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정부의 권한 위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외국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4. 해당 권한에 속한 투자안의 형성, 전개, 이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해결한다.
5.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의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6. 외국 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의 활동을 검사, 감사한다.

제59조

각 측 혹은 각 측 중 한 측 혹은 외국 투자자는 정부규정에 따라 투자허가서 발급신청 서류를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보낸다.

제60조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투자허가서 발급 심사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45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결정을 통보한다. 승인결정은 투자허가서 형식 하에 통보된다.

투자허가서는 동시에 경영등록인증서 이다.

제61조

합자계약, 경영협력계약, 기업정관, 경영목표와 생산규모 및 법정자본 납입 비율의 변경은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각부, 부급기관, 정부산하기관,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합리적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안의 이행 전개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63조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외국 투자자, 외국 투자자본 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 조직, 개인, 공무원, 국가기관은 위반

의 정도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생산 경영활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국가 건설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개인과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제64조

1. 기업활동의 감사는 직능과 권한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재정감사는 한 기업에 대해서 일년에 1번을 초과할 수 없다.
불시 감사는 기업의 법률 위반의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한다.
감사를 진행할 때는 권한을 가진 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감사가 종료될 때는 감사 보고서와 결론이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 보고서와 결론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감사를 결정하는 자가 법률에 맞지 않거나 기업의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감사를 이용하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혹은 형사책임을 묻는다. 만일 손해를 입히면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3.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 경영협력에 참가한 각 측, 조직, 개인은 법률 위반 행위와 결정, 어려움을 야기 시킨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청원권, 제소권이 있다. 청원과 제소 및 청원, 제소의 해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6장 부칙

제65조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자연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에 속한 병원, 학교, 연구소의 외국과의 투자협력을 규정한다.

제66조

1. 본 법에 규정된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는 외국투자자와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투자 보장, 보증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합의서의 내용 혹은 보장, 보증방법이 정부의 권한을 초과하는 것 이면 국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베트남에서의 외국투자활동은 본 법의 규정과 베트남 관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 법률에 규정이 안 된 경우에 각 측은, 만일 외국 법률의 적용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적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외국 법률의 적용을 계약서에 합의할 수 있다.

제67조

본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본 법은 1987년 12월 29일자 베트남 외국투자법, 1990년 6월 30일자 베트남 외국투자법 개정법, 1992년 12월 23일자 베트남 외국투자법 개정법을 대체하고, 1996년 11월 12일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을 수정한다.

제68조

정부는 본 법의 시행령을 제정한다.

국회의장
농·득·마잉